

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

주요변경사항(아동그룹홈 관련 부분)

출처 :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(T.02-364-1617)

| No. | 구분 | 페이지 | 변경내용 | 비고 |
|-----|---|-----|---|--|
| 1 | [1권]_(2) 보호기간 연장 | 149 | <p>-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경우)</p> | <p>-관련법률에 따른 등록학원으로 기준 명확화</p> |
| 2 | [1권]_(2) 보호기간 연장 | 149 | <p>* 19세미만 아동이 보호종료를 신청한 경우 아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종료조치</p> | <p>-연장보호 종료에 대한 보호아동 의지 확인</p> |
| 3 | [1권]_(1) 아동학대 신고 | 153 | <p>시설장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범죄 신고전화 국면없이 112)</p> | <p>-아동학대특례법 강화에 따라 과태료 상향(500만원 → 1000만원 상향)</p> |
| 4 | [1권]_(2)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의 규정에 의거~ | 155 | <p>※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 이집, 유치원, 초·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(재학(재원)증명서로 증빙)</p> | <p>-재학중 보호아동인 경우 재학증명서로 증빙 가능</p> |
| 5 | [1권]_공동생활가정의 추가 설치 기준 | 169 | <p>● 공동생활가정의 추가 설치 기준 *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 기준임</p> | <p>-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2.5m² 이상</p> |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|
| 6 | [1권]_다.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| 18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(채용이 확정되고 최종 임용되기 전 성범죄 경력조회)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 | -채용이 확정되고 최종 임용되기 전 성범죄 경력조회 필요 |
| 7 | [1권]_나. 종사자 인권 보호 | 19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아동의 부당한 요구, 폭언,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종사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종사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| -종사자 인권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명시 |
| 8 | [1권]_마. 행정사항 | 204 | <p>(3)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3월 이전 다음해 지원 필요시설 수요 제출</p> <p>※ 자자체의 평가가 완료된 신규지원 시설은 즉시 보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 확인</p> | -보조금 지원대상 신규시설에 대한 빠른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역할 명시 |